

제 1175 호
1985. 9. 1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
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598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

제 599 호 : 주택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2

◎ 공 고

제 534 호 : 주택개발사업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공고... 3

◎ 구청공고

은평구제 38 호 : 관인폐기공고 4

< 이 면 계 속 >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622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98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

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하고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한다.

1985. 9.12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1. 사업명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과 동
2. 사업주체	강서구화곡동 98-60 효창건설산업 대표 손상출	"
3. 사업시행의 위치 및 면적규모	강서구신정동산 115-62 8,328 ㎡	과 동
가. 위 치		8,328 ㎡
나. 면 적		연립주택 3층 5동 123세대상가 2층 1동
다. 건설규모	아파트 11층 1동 5층 1동 119 세대 상가 2층 1동 및 부대복리시설	부대복리시설
라. 사업시행기간	'85. 6 - '86. 4	과 동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99 호

주택개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

1. 건설부고시제 470 호 ('73.12.1) 제 155 호 (82.4.26) 및 제 346 호 (82.9.24) 로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 18 호 (75.

- 2.8)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(77.3.30) 제 561 호 (83.10.28) 제 193 호 (84.4.17) 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금호재 1 구역 (275,837 평방미터) 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제 5 조 제 8 조 2, 제 82 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6 조, 제 58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

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
 가. 내 역

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12.

서울특별시장

지구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금호제1구역	성동구응봉동 133번지일대	275,837	건축계획변경

나. 사유: 당초건축 계획의 건축율 40% 이내 용적을 100% 이내에서 건축율 21% 이내 용적을 153% 이내로 사업계획 변경코저함.
 다. 변경결정조서: 별첨(생략)

도시재개발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자 공람공고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주택과와 당해조합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, 공람기간안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34 호

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985. 9.12.

서울특별시장

1. 건설부고시제 221 호 ('85. 5.13)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358 호 ('85. 5.30) 로 지적승인되고 동 고시제 408 호 ('85.6.21) 로 사업계획결정된 천호 제 2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구연내 토지등의 소유자들로 부터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

가. 공고내용

- 1) 사업의명칭: 천호제 2 구역주택개량 재개발사업
- 2) 조합의명칭 및 소재지
 - 천호제 2 구역 재개발조합
 - 강동구천호동 421-10
- 3)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강동구천호동 410-90 일대 (9169 제곱미터중 8851 제곱미터)

